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소 송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하고,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개정

나. 승인 업무 일원화(안 제3조)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승인업무의 단순화·효율화 및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권을 강화

다. 관계행정청과의 협조(안 제9조)

법무부의 직원 등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

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수 임 자	수 임 의 한 계
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중인 법 제2조 및 법 제12조의 사건
고등검찰청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법 제2조 및 법 제12조의 사건과 당해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법 제12조의 사건
고등검찰청 소재지외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법 제12조의 사건

제3조 중 “소송물가액이상의 소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송물가액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무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하 “해당

검찰청”이라 한다)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을 “법무부의 직원을”로,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를 “법무부의 직원으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각급”을 “법무부장관, 각급”으로 한다.

제9조 중 “검사·공익법무관”을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해당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법무부장관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2조 및 법 제5조의 사건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 및 각급”을 “각급”으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법 제2조의 사건”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법 제5조의 소송사건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소송물가액이상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송물가액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u>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u> <u>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u> ----- ----- ----- <u>소</u> <u>송사건</u>----- ----- ----- ----- ----- <u>법무부장관</u>----- ----- ----- ----- -----.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행정소송사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 각호외의 행정소송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하 “해당검찰청”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

③ 행정청의 장은 관할 특허법원 ·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 부터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 법무부의 직원-----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

-----.

③-----

----- 법무부장관-----

-----.

④-----

----- 경우

법무부장관-----

검찰청 검사장은 공동수행사건
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공익법
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
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소관행
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 ·
② (생략)
③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
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
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
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
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없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
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
의 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 또
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
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 법무부의 직원을 ---

----- 법무부의
직원으로 -----

-----.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무부장관, 각급 -----

-----.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
관 -----

-----.

제10조(재판결과 보고) -----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수행해태) <신 설>

① (생략)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당해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신 설>

법무부장관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제14조(소송수행해태) ①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①법무부장관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2조 및 법 제5조의 사건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② 각급 -----

--- 법 제2조의 사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송무과	
연 락 처	